

일련번호	1	감사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구로구청 (가부서)		종류	인원	조치방법
		주의요구	2	금액(천원)

제 목 건설공사의 하수급인 자격 부적정

【 지적내용 】

구로구청(이하 '발주자'라 한다)은 '17. 2. 8. A사(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와 도급계약 (준공 '18.11.30., 금액 4,326백만 원)을 체결하여 '구로구 ○○○○○○○○ 신축공사' (이하 '이 건 건설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으며,

'17. 4.11. B사와 이 건 건설공사의 감리용역(완수 '18.12.13., 금액 71백만 원)을 체결하고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한편 수급인은 '17.11.20. 이 건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준공 '18.10.31., 금액 458백만 원)” 에 대하여 C사(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르면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도급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3.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부대공사의 범위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 등)에 따르면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 공사' 이거나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 원 미만이고 주된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전체 공사 예정금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그 나머지 부분의 공사'라고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 예규 제241호('12.7.5.)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건설업자의 영업 범위 관련)”에 따르면 주된 공사는 ‘종합건설업종 및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 이고 종된 공사는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기타현지 여건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전문건설업의 면허없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 제1항에 따라 해당공사가 건설업 등록이 필요없는 부대공사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 전 건설공사의 비계설치·해체공사와 관련하여서는 관계 전문가 검토결과 비계공사는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와는 공정순서가 다르고, 각 공종이 완료된 후 공사가 진행되며 작업 난이도 및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공종이고,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작업자의 작업편의와 안전확보를 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로서 철근콘크리트공사와는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에 따르면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비계의 조립 및 해체 작업 시에는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근콘크리트의 부대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제2항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3호, '17.2.4.)」 제2장 공사감리업무 2.5.1. 하도급 적정성 검토 3.에 따르면 공사감리자는 시공자가 하도급 사항을 위장 하도급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에서도 건축사는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제출한 직접시공계획서상에는 비계 공종을 하도급 공종 중 가설공사 공종에 포함시켰으나 실질적으로는 비계공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와 하도급 계약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종만 등록한 하수급인에게 철근콘크리트공사 및 비계공사까지 시공토록 하였다.

[표] 하도급 계약 현황

실제공종	하도급 계약내용	하수급인 전문업종	지적사항
철근콘크리트공사 비계공사	- 공사명 : 철근콘크리트공사 - 계약자 : C사 - 계약금 : 458백만 원 - 기 간 : '17.11.20.~'18.10.31. ※ 비계공종 : 34백만 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무등록

발주자(공사관리관)의 하도급 관리 소홀행위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의무) 제2항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73호)」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 제10조(발주청,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시공자, 설계자의 기본업무), 제12조(발주청의 지도감독 및 업무범위) 관련 규정에 위반된 것이다.

【 조치할 사항 】

구로구청장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하지 않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를 위반한 수급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및 같은 법 제96조(벌칙) 제4호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31조의2(과징금)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이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해당 업종을 등록하지 않고 하도급을 받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및 제16조(건설공사의 시공자격)를 위반한 하수급인에게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같은 법 제95조의 2(벌칙) 제1호에 따라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제2장 공사감리업무 2.5.3. 무면허자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도를 소홀한 공사감리자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통보)

공사관리관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무자격자인 하수급인에게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교육하시기 바랍니다.(주의요구)

※ 신분상 조치

- 하도급 관리를 소홀히 한 공사관리관에게 신분상 조치